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464
----------	-----

2024. 1. 30.(화)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유재목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3년 11월 16일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17일

라. 상정일자 : 2024년 1월 25일

- 제4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유재목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소규모 영세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정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, 자동차정비업 중 일부 업종에서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 확보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·원동기전문정비업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 확보 기준 완화(안 제6조)
 - － (기존) 3명 → (개정) 2명
- 그 밖에 불필요한 정의 규정 삭제 및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7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김홍식 수석전문위원)

- 현행 조례 제6조제2호는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으로 정비요원의 인원수를 아래와 같이 정함.
 - － 자동차종합정비업,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, 원동기전문정비업 : 3명 이상
 - － 자동차전문정비업 : 1명 이상
-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정비업 종류에 따라 정비대상·시설규모의 차이가 있음에도 확보해야 하는 정비요원 인원수가 동일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정비요원 최소인원 기준을 차등하게 개정할 것을 권고함(‘23. 2. 28.).
- 광주, 울산 및 세종을 제외한 13개 시도는 소형자동차·원동기전문정비업은 2명 이상으로 정비요원 인원수를 차등하여 정하고 있고, 청주시도 동일함.
- 이 같은 개정 내용에 대하여 도내 11개 시군은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, 도내 영업 중인 총 29개 관련 업체도 전반적으로 정비요원 확보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.
- 그 밖에 조문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조례안 예고(‘24. 1. 8. ~ ‘24. 1. 18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.

4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의 정비요원 확보 기준을 기존‘3명 이상’에서‘2명 이상’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,
- 개정에 따라 부실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독부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6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7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8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

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자동차관리법」 제53조제3항에 따른”을 “「자동차관리법」 제53조제3항에 따라”로, “관한 필요사항”을 “관하여 필요한 사항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삭제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적용범위)”를 “(다른 조례와의 관계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절차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”를 “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”으로, “조례에 의한다”를 “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”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)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제53조제3항”을 “법 제53조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자동차(이하“가스자동차“라 한다)”를 “자동차”로, “(이하“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“라 한다)는 별표 3에 따른 시설기준”을 “(이하 “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”라 한다)는 별표 3의 시설 및 작업기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실시하고,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15조”를 “실시하고,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15조”로, “이수토록”을 “이수하도록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다만, 「건설산업기본법」 ”을 “다만, 「건설산업기본법」 ”으로 한다.

2.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확보할 것. 이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경우에는 자동차정비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를 포함하여 확보할 수 있다.

가. 자동차종합정비업: 3명 이상

나.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: 2명 이상

다. 자동차전문정비업: 1명 이상

3. 정비요원 총수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은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자동차정비·자동차차체수리·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일 것

가. 자동차종합정비업: 16명 이상

나.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: 11명 이상

다. 자동차전문정비업: 6명 이상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동차해체재활용업(이하 “해체재활용업”이라 한다)”을 “자동차해체재활용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작업기준”을 “작업기준을 갖출 것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동차 관리법」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자동차 관리법」 제53조제3항에 따라 - ----- -- 관하여 필요한 사항----- -----.
제2조(정의) “자동차관리사업” 이라 함은 「자동차관리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2조 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·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 활용업을 말한다.	<삭 제>
제3조(적용범위) 자동차관리사업 의 등록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 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.	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----- -----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----- -----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4조(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)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매매업은 별표 1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	제4조(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)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제6조(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) ① 법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 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	제6조(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) ① 법 제53조제3항----- -----

호와 같다.

1. (생략)

2.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명 이상(자동차전문정비업은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을 말한다)의 정비요원을 두되, 정비요원 총 수의 5분의 1 이상은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일 것.

<신설>

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확보할 것. 이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경우에는 자동차정비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 보수도장기능사를 포함하여 확보할 수 있다.

가. 자동차종합정비업: 3명 이상

나.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: 2명 이상

다. 자동차전문정비업: 1명 이상

3. 정비요원 총수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은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자동차정비·자동차차체

② (생 략)

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 LPG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자동차(이하 “가스자동차 “라 한다)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(액면계, 탱크차단 밸브 등)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 “라 한다)는 별표 3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

④ 제3항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는 별표 3의 작업기준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,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15조에 따

수리·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일 것

가. 자동차종합정비업: 16명 이상

나.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: 11명 이상

다. 자동차전문정비업: 6명 이상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자동차-----

----- (이하 “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”라 한다)는 별표 3의 시설 및 작업기준-----.

④ -----

----- 실시하고,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15조----

른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임명
하여야 하며, 같은 법 제23조에
따른 안전교육(전문교육)을 인
수토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건
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가스시
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
자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자 임명
및 교육이수를 적용하지 아니한
다.

제7조(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
록기준)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
자동차해체재활용업(이하 “해
체재활용업”이라 한다)의 등
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별표 4의 시설 및 작업기준
2. · 3. (생략)

----- 이수하
도록 ----- . 다만, 「건설산
업기본법」-----

--.

제7조(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
록기준) -----
---- 자동차해체재활용업----

----- .

1. ----- 작업기준을
갖출 것
2. · 3. (현행과 같음)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○ 사 유

-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영세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정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, 자동차정비업 중 일부 업종에서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 확보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,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